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교육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및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개정 시행 안내

1. 관련: 감염병정책총괄과-1182

2. 질병관리청에서 현재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대응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2건)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1)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제1호, 8호, 9호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설
- 2) 「감염병의 진단기준」 제2급감염병 [2-22]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설

나. 시행일 : '22.4.25.

- 붙임 1.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 1부.
2.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교육부장



각실과, 고등교육기관전체, 소속기관, 소속단체, 시도교육청

주무관

이몽룡

행정사무관

김은미

학생건강정책
과장

전결 2022.4.25.

정희권

협조자

시행 학생건강정책과-3459 ((2022.4.25.)) 접수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동 (어진 / www.moe.go.kr
동)

전화 044-203-6960 전송 044-203-6438 / leemong@korea.kr / 공개